

[별지 제24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재질·구조개선평가대장				
대상제품				
평가자				
평가일 및 장소				
평가내용				
내용 평가사항	개선대상	평가내용	평가결과	향후개선 사항
구조개선사항				
재질개선사항				
특기사항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※ 작성요령

1. 평가대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제조를 위한 설계단계에서 시행·기록합니다.
2. 대상제품에 명칭과 고유모델번호 등을 기재합니다.
3. 평가자는 설계담당부서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합니다.
4. 개선대상은 개선되어질 부품종류별 또는 재질종류별로 기재합니다.
5. 평가내용은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6. 평가결과는 평가 후 제품생산 시 적용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.
7. 향후 개선사항에는 기술부족 또는 설비미비 등의 사유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나,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합니다.
8. 구조 및 재질개선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·구조개선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